

#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 Improving the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Classification System Types\*

박지영 (Ziyoung Park)

E-mail: zgpark@hansung.ac.kr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논문접수 2024.4.19  
최초심사 2024.4.20  
게재확정 2024.5.12

ORCID

Ziyoung Park  
https://orcid.org/0000-0002-8985-9991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classification systems used in the public sector, collected based on legislation, and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public records.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375 legislative clauses were searched, revealing about 80 classification systems. These systems were initially divided into lists, tables, and hierarchical classifications. Six types of classification system uses were proposed after combining three management types and two system functions. Among these models, classification systems used for core operations in public agencies often had the same entity as both developer and user. While systems adopted from other institutions were often modified as needed, they were predominantly used for reference tasks rather than core operations. However, in records management, crucial tasks such as recor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commonly use unmodified classification system items developed and managed by other agencie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at structu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It suggests developing dedicated classification systems to support core functions or modifying existing systems and also applying records management disposal standards and guidelines to other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Keywords:** 기록분류, 정부기능연계모델, 분류체계, 기록처분, 공공영역  
Records Classification, Business Reference Model, Classification scheme,  
records disposal, public sector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51524)

## 1. 서론

공공기록 관리에서 기록분류는 기록의 등록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며 기록분류체계는 기록분류를 위한 통제도구이다.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분류 정보를 통해 기록을 검색하는 것보다 분류 정보에 연계된 처분행위와 같은 기록관리 정보에 더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관리 분야에서도 정보 검색과 연계를 위해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각 분류항목마다 식별기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식별기호에 보존기간이나 공개여부를 직접 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류정보가 잘못 부여된다면 검색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정보 자체가 폐기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업무기능 기반의 기록분류체계는 기록의 등록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록물관리기관에 공공기록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기록의 분류와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규정된 바를 실행해야 한다.

한편 기록관리 분야는 2000년 이후 기록분류체계를 2차례 개정한 바 있다. 2003년까지는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를 사용하여 세부 항목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했으나, 보존기간 책정이나 업무 현황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도입하여 기록물을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책정했다(국가기록원, [2022]). 2007년 이후에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BRM)를 기록분류체계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BRM의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관리하지만,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분류체계 자체를 2차례나 바꾼 사례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기록 분류체계를 바뀌었음에도 보존기간 책정과 관련된 기록분류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남서진, 임진희, 2017; 설문원, 2013a; 2013b; 설문원, 이승익, 2020). 행정학 분야에서 BRM 정비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학계에서는 BR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업에서 BRM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수요’로 기록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차세영, 윤광석, 2023, 3).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BRM을 기록분류체계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공공영역 전체로 확대해서 분석하고자 했다. 다른 공공영역에서도 기록관리 분야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기록관리 사례를 분석하는 대신에 국내의 다른 공공영역에서 분류체계를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거나, 적어도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측면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활용되는 분류체계를 찾기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랫폼을 활용했다. 법령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수집한 것은 공공영역의 특성상 업무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핵심 분류체계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자체나 활용 가이드 등은 별도의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수 있지만, 분류체계의 개발이나 관리 근거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분류’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분류체계를 확인하고, 기록분류체계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단, 키워드 검색을 통해 포착하지 못한 분류체계가 있을 것이며,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관리 도구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분류체계만으로 기록관리를 위한 통제도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업무기반 기록분류

### 2.1 기록분류의 원칙과 기능

업무기반 기록분류의 이론적 바탕이 된 KS X ISO 15489-1:2016에 따르면, 기록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처리행위 중에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 접수 및 유지하는 정보’이다(2021, 3). 이때 기록이라는 정보자원에 내재된 맥락을 분석하고 검색을 지원하는 것은 분류체계나 색인작성을 위한 통제어휘가 가진 공통적인 기능이다. 특정 기록이 업무 행위와 관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업무 행위와 관련된 주제나 장소,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검색어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분류는 기록의 검색과 색인 외에 처분이나 접근과 같은 다른 기록관리 프로세스도 지원한다.

또한 KS X ISO 15489-1:2016에서는 기록분류를 ‘범주 속에 업무활동 및/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분류체계는 ‘기록과 그 생산 맥락을 연결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분류 프로세스를 통해 기록과 그 기반이 되는 업무를 적절한 계층에서 연결하고, 개별기록과 기록집합을 연계하여 업무 활동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신의 통제도구’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록 통제도구를 검토할 것도 권고한다(2016, 2, 5, 18). 즉, 현대의 현용기록 관리 환경에서는 사전에 분석한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개별 분류항목에 기록을 할당하여 기록의 처분과 접근 등의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KS X ISO TR 21946:2018을 보면, 기록관리를 위한 평가 결과는 기록 통제도구를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이 때 기록 통제도구에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업무분류체계, 접근과 허용규칙, 처분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 절차뿐 아니라 정보 거버넌스 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거나 개정할 수도 있다(2022, iv, 18).

이와 같은 원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AK 4:2021에 따르면 공공기록 관리에서 처분지침으로 활용하는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를 보면 BRM에 기록관리 항목이 연계되어 있다. 분류체계 최하위 계층인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이나 보존기간 책정사유와 같은 정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2021, 3). 이와 같이 기록분류는 업무 맥락을 반영할 뿐 아니라 처분이나 접근을 포함한 기록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 2.2 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

#### 2.2.1 기록물분류기준표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에서 기록물분류체계의 도입은 분류체계를 개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존기록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회고적 관점의 기록관리체계가 기록의 생산시점에서부터 기록을 통제하는 기록보유 체계로 확장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도입 준비단계에서 분류기준표의 의의를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와 구분되는 ‘기록보유’(recordkeeping)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승억(2001)의 연구가 있다. 이승억(2001, 34-43)은 분류기준표가 기록의 생산에서 처리에 이르는 전 단계를 규정하는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으며, 분류기준표 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 번째 특징은 ‘포괄적 문서화’(documentation)로서 업무활동을 기관별 단위업무에 따라 충실히 문서화하는 것이다. 포괄적 문서화는 결재기록 중심의 건 단위 기록의 등록과 보존에서 업무활동의 입안과 종결까지 전 과정의 기록물 등록과 보존을 의미한다. 이때 분류기준표는 기록물 등록을 위한 기준표가 되고, 보존장소나 보존방식

등을 지정하는 처리일정표가 되며, 기록의 검색을 위한 색인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특징은 조직과 업무 활동, 기록이 연계된다는 점이다.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활동이 연계되는데, 이때 단위업무는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된다. 세 번째 특징은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이원화로서 생산기관에서 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적용한 보존기간과 보존기간 종료 후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재책정하는 보존기간으로 나뉜다. 이는 생산기관에서 시행되는 보존기간보다 기록물관리 전문기관의 보존기간 책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기록물분류기준표 도입 이후 박유진(2003, 61-68)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 원칙을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분담과 협력에 의한 운영이다. 분류기준표 작성과정이 처리과의 신청과 자료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와 같은 당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와 감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분류기준표의 제정권자는 현재의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정부기록보존소였다. 두 번째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다. 탄력적 운영은 단위업무 관리의 효율성과 단위업무 설정기준의 유연성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존의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가 정부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고시하는 방식에 비해 분류기준표를 바탕으로 단위업무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단위업무의 설정 기준으로 기록물의 종류나 기능, 성격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도 유연한 운영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기록분류가 기록의 편철과 보존을 결정하므로 기능뿐 아니라 기록물의 특성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학교 등은 자체적인 분류기준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탄력성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산관리방식을 통해 분류기준표의 변동내역을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다시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설문원(2006)은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가장 주목할 도구가 ‘기록보유일정표’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 이 도구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유형, 구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원은 호주와 미국의 보유일정표를 비롯하여 국외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기능표준 등을 함께 분석했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에는 기록유형에 따라 기록물 기술정보와 처분지침이 부여되는 데에 반해 우리는 처리과 하위의 단위업무에 처분지침이 부여되는 차이가 있었다. 설문원은 우리나라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단위업무가 조직 단위인 처리과 분류에 귀속되어 있고 하위의 업무별 기록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록의 생산이나 획득에 대한 지침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SO 15489에서 ‘각 업무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기록’을 표현하는 요소로 호주의 ‘기록 기술’과 미국의 ‘시리즈 기술’을 꼽았는데 우리나라의 분류기준표에서는 이 요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기준표와 같은 보유일정표를 재설계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설문원, 2006, 214-217). 첫째로 유형 측면에서는 공통 보유일정표와 기관별 고유 보유일정표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록유형별 보유지침 및 주요사업별 보유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조 측면에서는 BRM과 연계하여 기능모형을 갖추는 것이다. 이 때 현행 업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BRM과 달리, 기록분류체계는 사라진 업무를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도 분류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보유일정표에 기록유형에 대한 설명과 가변시점 처분기록(contingent records)을 포함한 기록처분의 기산점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2.2.2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기록관리기준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처분지침에 해당하는 도구는 기록관리기준표이고, 기록관리기준표에서는 업무활동의 기록화를 위해 BRM의 최하위 단계인 단위과제를 기록관리 항목을 부여하는 단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BRM이 기록분류체계로 도입된 것이다. 기록은 집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보존기간과 같은 기록관리 항목이 단위과제 수준의 기록집합에 적용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BRM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록분류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에서는 기록분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BRM 자체가 갖는 한계와 BRM 관리체계상의 한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서는 BRM이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개발되지 못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원래부터 기록관리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설문원, 2013a; 2013b). BRM의 개발 목적이 기록관리가 아니므로 기록분류 도구로서 결함이 존재하고, 분류체계의 관리권한도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존가치나 법규 요건 등에 따라 기록유형별로 보존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단위업무에서 산출되는 기록이라도 보존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BRM만으로는 기록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설문원, 2006, 212; 2013b, 232). 후자의 입장에서는 주로 현재 기록분류에 활용되는 BRM 자체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서진, 임진희(2017, 144-156)는 BRM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기능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능 분류가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업무기능이 아닌 업무요소가 기능으로 사용된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BRM 재정비를 위해서는 분류체계 그 자체뿐 아니라 관리와 운영방식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기능분류체계시스템 관리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면 BRM 데이터 품질에 관한 통제 센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화경, 김은주(2014)는 공공기관의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BRM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 BRM을 도입할 때 충분한 업무기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기존의 문서관리시스템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정보가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에 맵핑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BRM의 관리권한이 조직관리 부서에 있어서 단위과제 등록에서부터 기록관리 전문가의 적극적 관여가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제기했다.

### 3.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현황 분석

#### 3.1 법령을 통해 분석한 분류체계 현황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분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분류’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조문제목을 기준으로 총375건이 검색되었다. 개별 조문제목에서 연결되는 조문 본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법령명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인 조문제목을 보면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분류체계가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모두 검색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단계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된다. 건설폐기물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이 법률 조문에서 건설폐기물 분류에 관해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는 표 형식의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라 환경부의 폐자원관리과는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식을 달리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건설폐기물의분류등)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분류체계)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된 조문제목을 모두 분석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류체계 80여 개를 식별할 수

있었다. 소관부처별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전체 분류체계와 법령명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통계청이나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표준분류는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 외에도 존재하지만, 분류체계 종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종수를 나타내는 숫자의 오른쪽에 ‘+’로 표기했다.

[표 1] 법령의 조문제목을 통해 도출한 공공영역의 분야별 분류체계의 소관부처별 목록

| 소관부처               | 분류체계                                 | 종수 |
|--------------------|--------------------------------------|----|
| 고용노동부              | •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 5  |
|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
|                    | • 보안과제의 분류                           |    |
|                    | • 생명공학분류체계                           |    |
|                    | • 정기통신설비 분류 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 2  |
|                    | • 무선국 업무분류                           |    |
| 교육부                | • 회계기준(자산 분류 등)                      | 3  |
|                    | • 학술표준분류체계                           |    |
|                    | • 교습과정의 분류                           |    |
| 국가정보원              | • 비밀의 분류                             | 1  |
| 국방부                | • 군무원의 계급 등                          | 2  |
|                    | • 군수품의 분류                            |    |
| 국방부, 방위사업청         | • 원가 비목 분류                           | 2  |
|                    | • 무기체계의 분류                           |    |
| 국방부, 병무청           | • 적성의 분류                             | 1  |
| 국토교통부              |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1  |
|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     | • 기록물 분류                             | 1  |
| 기획재정부              | • 세율 및 품목 분류                         | 4  |
|                    | • 국고금 분류                             |    |
|                    | • 국유재산의 분류                           |    |
|                    | • 물품분류                               |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 3  |
|                    | • 도시농업 유형분류                          |    |
|                    |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    |
| 문화체육관광부            | • (게임물의) 등급분류                        | 4  |
|                    |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    |
|                    | • 상영등급분류                             |    |
|                    |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    |
| 법무부                | • 수형자 분류처우                           | 5  |
|                    | • 행정문서의 분류                           |    |
|                    | • 소년원의 분류                            |    |
|                    | • 희생채권자 등의 분류                        |    |
|                    | • 헌법재판소 수형자의 분류심사                    |    |
| 법원행정처(법원기록보존소 포함)  | • 비밀의분류                              | 2  |
|                    | • 기록물의분류                             |    |
| 보건복지부              |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 2  |
|                    | • 환자의 중증도 분류                         |    |
| 소방청                | • 사상자의 분류                            | 2  |
|                    | • 소방장비의 분류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의료제품의 분류                           | 5  |
|                    | • 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           |    |
|                    | • 의료기기 등급분류                          |    |
|                    | •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    |
|                    | •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    |
| 외교부                | • 업무분야의 분류(주재관업무분야분류표)               | 1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물리적 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 1  |
| 인사혁신처              | • 직위분류                               | 1  |
| 중소기업벤처부            | • 업종분류(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 | • 기록물분류(기록물분류기준표)                    | 1  |
| 통계청, 기획재정부         | •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 | 3+ |

|              |                                                                                                                                                                                                                          |    |
|--------------|--------------------------------------------------------------------------------------------------------------------------------------------------------------------------------------------------------------------------|----|
| 특허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li> <li>상품분류</li> <li>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 분류</li> </ul>                                                                       | 5+ |
| 해양수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물질분류</li> <li>위험물의 분류</li> <li>고체위험물질의 분류</li> <li>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li> </ul>                                                                                     | 4  |
| 행정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의 분류(공공기록의 분류, 기록관리기준표)</li> <li>물품분류</li> <li>옥외광고물의 분류</li> <li>재난관리물품의 분류</li> <li>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li> <li>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li> <li>직위분류(직위분류제)</li> <li>자산, 부채, 순자산의 분류</li> </ul> | 8  |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위분류</li> </ul>                                                                                                                                                                   | 1  |
| 행정안전부,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li> </ul>                                                                                                                                                           | 1  |
| 헌법재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의 분류(사건기록의 분류)</li> <li>기록물의 분류</li> <li>비밀의 분류</li> </ul>                                                                                                                      | 3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폐기물의 분류(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li> <li>사업장의 분류</li> <li>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분류</li> <li>폐기물의 세부분류</li> </ul>                                                                             | 4  |

### 3.2 법령에 나타난 분류체계의 형식

조문제목을 통해 확인한 법령상의 분류체계는 분류대상이나 소관부처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다양했다. 분류체계의 제공방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유형화하면 <표 2>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법령에 제시된 분류표의 유형 구분

| 번호 | 유형                                 | 설명                                                                         | 예시                                                      |
|----|------------------------------------|----------------------------------------------------------------------------|---------------------------------------------------------|
| 1  | 분류항목을 열거하여<br>입력가능한 값을 통제하는<br>리스트 | 별도의 표로 관리하지 않고, 본문 내에서 열거하는<br>형식으로 주로 법령의 특정 항에서 ‘각 호에 따른’<br>등으로 제시되어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br>법률」 제21조(등급분류) 제2항에서<br>1~4에 제시한 게임물의 등급 |
| 2  | 1~3단계의 간략한 분류표                     |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주로<br>법령의 별표 등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br>종류별 분류체계   |
| 3  | 3단계 이상의 방대한<br>계층분류표               | 분류항목이 상대적으로 방대하며, 분류체계뿐<br>아니라 해설서와 가이드, 별도의 플랫폼을<br>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관세청의 세율 및 품목<br>분류(HS-CODE)                             |

1번과 같은 리스트 형식은 단일 계층의 분류항목을 법령 본문에 ‘각 호에 따른’이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과 같이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를 보면,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제19조3항에서는 재난관리물품의 성질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번과 같이 간략한 표 형식은 1~3단계의 계층구조로된 분류체계로서 주로 법령 시행규칙의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분류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에 ‘※검색어가 포함된 별표입니다.(분류표)’라는 표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를 보면, ‘불연성>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와 같은 3단계 표로 제시되어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제3조의2 관련)**

|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
|--------|----------|------------------------------------------|
| 가연성    | 40-02-06 | 폐목재 (나무의 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40-02-07 | 폐합성수지                                    |
|        | 40-02-08 | 폐실유                                      |
|        | 40-02-09 | 폐벽지                                      |
| 건설 폐재류 | 40-01-01 | 폐콘크리트                                    |
|        |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40-01-03 | 폐벽돌                                      |
|        | 40-01-04 | 폐블록                                      |

[그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이 외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이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도 2번 형식의 분류체계에 해당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제시된 ‘보존기간별 책정기준’도 이 유형에 속한다. 참고고로 이와 같은 분류표는 전자기록 관리 환경에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입력체계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검역법 시행규칙의 별지에는 외항선(입항,출항) 통보서가 있는데, 이 통보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관세율표-부류목록(UI-ULS-0201-002Q)

관세율표 > 한국 [2024년]

검색

| 부                    | 류                                                | 비고  |
|----------------------|--------------------------------------------------|-----|
|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 0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 업설서 |
|                      | 02 제2류 육과 식용 신태(獸肉)                              | 업설서 |
|                      | 0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업설서 |
|                      | 0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업설서 |
|                      | 0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업설서 |

[그림 2]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관세율표 정보 화면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번과 같은 형식의 분류체계는 보통 3단계 이상의 분류계층으로 구성되고 분류항목의 수도 방대하다. 이 유형은 대부분 분류체계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있고, 정기적으로 분류체계의 개정사항을 검토하며, 수정 내용을 국민에게 고시하는 등 관리체계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관세청의 세율 및 품목 분류에 사용되는 분류표는 관세율표라고도 하는데,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같은 별도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분류표는 주로 국제표준과 연계되며 항목별로 상세한 해설이 제공된다.

## 4.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모델

공공영역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모델을 2가지 관점에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하나는 분류체계의 개발 의도와 적용 분야의 일치 정도에 따른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분류체계의 기능 차이에 따른 모델이다. 기능 차이에 따른 유형은 <표 3>과 같이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수행과 검색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으로 구분했다.

<표 3> 공공영역의 분류체계 관리 및 활용 유형

| 구분                 | 분류체계 개발 의도와<br>적용 분야가 일치    | 적용 분야에 맞추어 기존의<br>분류체계를 수정하거나 연계 | 개발 의도가 다른<br>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   |
|--------------------|-----------------------------|----------------------------------|-----------------------------|
| 의사결정 지원 및<br>업무 수행 |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br>자체 분류체계의 개발 | 핵심 업무 수행에<br>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수정 적용   | 핵심 업무 수행에<br>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적용 |
| 서비스 및 참고용<br>활용    | 참조 업무 수행을 위한<br>자체 분류체계의 개발 | 참조 업무 수행에<br>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수정 적용   | 참조 업무 수행에<br>유관 분야 분류체계를 적용 |

### 4.1 분류체계 개발과 활용주체에 따른 모델

#### 4.1.1 소관부처에서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한 경우

이 모델은 분류체계의 개발 목적과 적용대상이 일치하여, 개발 당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해당 기관의 고유한 분류체계로 관리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율 및 품목분류표가 이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한다. 품목분류표는 ‘HS-CODE’라고도 하는데,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별표(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품목분류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관세법을 보면 제4절 품목분류에서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심사 후 품목분류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품목분류의 관리절차뿐 아니라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품목분류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품목분류 외에도 국가 수준의 안정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분류체계들이 있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통계분류포털을 통해 분류체계의 내용과 제개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4).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취득·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분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앞 절의 분류체계 유형의 3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분류표에 속한다. 물론 이 모델에 속하는 분류표의 규모가 모두 큰 것만은 아니다. 앞 절에서 1번에 해당하는 리스트 유형의 분류체계로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모두 소관부처인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제시된 무기체계의 분류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가 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업무를 위해 개발한 리스트 형식의 분류표로서 같은 유형에 속하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의 구분이나 공공기록물법의 보존기간 책정유형도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더 등 감시·정찰무기체계(이하 생략)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비,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유도탄물자, 전기·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이하 생략)

#### 4.1.2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일부 수정하거나 연계한 경우

이 유형은 자체 분류체계를 관리하면서도 유관분야의 분류표와 연계하는 경우이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류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 분류체계로 국가표준분류체계가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되 기본 분류체계와 연계하는 것이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9조(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체 분류체계를 개발·관리하면서도 활용을 위해 타 분류체계와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을 바탕으로 한 특허분류와 상표법을 바탕으로 한 상품분류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허분류 정보를 통계법에 따른 산업 표준분류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동법 시행규칙에서 분류체계 개발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의 연계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또한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도록 명확히 시행규칙에 제시해 두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개정 2019. 7.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업종연합회의 분류에 통계법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위 분류항목을 적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연합회에 적용되는 업종 분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업종의분류)①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23., 2009. 10. 7., 2017. 7.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0. 7.>

③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 4.1.3 타 부서의 분류체계 일부나 전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모든 부처에서 고유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분류체계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타 부처나 부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입항,출항) 통보서(최초,변경,최종,취소)에서 화물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표의 항목을 적용한다. 품목분류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양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는 것이다. 경찰청의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경비업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는데, 다만 특별 규정을 통해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이 외에도 <표 4>와 같이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나 통계청의 표준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기획과가 소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의 BRM의 단위과제를 분류기준이자 분류단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는 경우도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4> 타부처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사례와 관련 법령의 일부 예시

| 항목                                                                    | 관련 내용                                                           | 관련 분류표               | 소관부처<br>(분류표 소관부처) |
|-----------------------------------------------------------------------|-----------------------------------------------------------------|----------------------|--------------------|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입항,출항) 통보서 (최초,변경,최종,취소)                     | 품목분류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양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음        | 품목분류표                | 보건복지부<br>(기획재정부)   |
|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2항                                | 영업의 범위에 관해 이 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경찰청<br>(통계청)       |
| 계산증명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 물품관리계산서                                        | “분류”란에는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분류표를 적음                          | 물품관리계산서 내 분류항목       | 감사원<br>(기획재정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 건설업 등의 범위에 관해 이 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고용노동부<br>(통계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를 입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고용노동부<br>(통계청)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2항,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외                 | 사업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한국표준직업분류표 | 고용노동부<br>(통계청)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고용노동부<br>(통계청)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노동단체카드           | 노동단체카드의 산업 종류 코드번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적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고용노동부<br>(통계청)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질품 등) 제4항2의나 등                         |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기획재정부<br>(통계청)     |

## 4.2 분류체계의 기능에 따른 모델

### 4.2.1 기관의 핵심 업무 지원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 지원이나 핵심 업무 수행에 분류체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체계의 품질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 세율을 결정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여기에

속한다. 특정 물품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정된 세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조세심판원, 2023).

|            |                                                                                                                                                                                                                                                                                                                                                                                                                                                                                                     |          |            |
|------------|-----------------------------------------------------------------------------------------------------------------------------------------------------------------------------------------------------------------------------------------------------------------------------------------------------------------------------------------------------------------------------------------------------------------------------------------------------------------------------------------------------|----------|------------|
| 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 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3관0024                                                                                                                                                                                                                                                                                                                                                                                                                                                                                         | 결정일(선고일) | 2023-11-06 |
| 결정요지(판결요지) |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 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
| 주문         | ○○○ 세관장이 2022.10.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첨부파일       | <p><b>1. 처분 개요</b></p> <p>가. 청구법인은 2018.1.13.부터 2022.7.13.까지 ○○○에 소재한 ○○○으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호 등 ○○○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p> <p>나. 청구법인은 2022.9.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2000호(양허관세율 0%)의 '○○○(이하 '쟁점 완제품'이라 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9. 이를 거부하였다.</p> <p>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p> |          |            |

[그림 3]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 결정 관련 처분 사례  
(조세심판원, 2023, 출처: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503&bbsNo=294>)

<그림 3>을 보면 쟁점물품이 되는 커버 글라스의 분류에 대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과 '기타 안전강화유리'가 대립하고 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세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고유한 핵심기능이기도 하다. 즉, 특정 기관의 핵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분류체계가 기관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는 더 있다. 특허분류표는 특허 출원 심사 단위와 그룹을 결정하고, 연구분야분류표는 학술연구 신청 과제 심사를 위한 단위와 그룹을 만든다. 건축용도분류표는 건축물의 인허가 심사에 필요하고, 건설폐기물 분류도 폐기물 처리 결정에 활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표를 활용하는 기능은 대부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에 해당된다. 기록관리 업무에서도 BRM의 단위과제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의 단위이자 기록물 집합 구성의 기준이 된다. 보존기간 책정과 그 결과에 따른 기록물의 처분은 기록관리를 위한 핵심 업무에 해당된다.

#### 4.2.2 참조 업무 지원

분류체계를 검색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며,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가 이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의 정보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에 관해서는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를 따라야 한다. 승인과 관련해서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개별 기관에서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분류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할 책무를 가지며, 이외 통계작성기관도 통계 작성 시에 표준분류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체 분류체계의 개발이나 기존 분류체계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즉, 국가의 표준통계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통계용 분류체계 작성권한이 제한되는 것이다.

제22조(표준분류)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취득·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④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고유한 핵심 업무인 통계청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통계 작성에 협조’하여 그 결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작성 자체가 세울 결정이나 출원된 특허의 심사, 연구과제의 선정 심사, 보존기간 책정과 기록물 처분과 같이 개별 기관의 직접적인 핵심 업무는 아니다. 이 외에도 정보검색이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류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 자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 분류체계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 4.3 기록분류 개선을 위한 제안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제시된 분류체계를 관리주체에 따라 개발주체와 활용주체, 기능에 따라 핵심 업무 지원과 참조업무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체계 활용 모델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책정을 포함한 기록의 평가와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록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표 5>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5> 기록분류 개선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 및 운영 개선 제안

| 개선(안)                          | 주요 내용                                                                                                                                                                               |
|--------------------------------|-------------------------------------------------------------------------------------------------------------------------------------------------------------------------------------|
| 핵심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 개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의 보존가치 선별 등 핵심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분류체계(일명, ‘처분분류’ 또는 ‘평가분류’)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BRM은 처분분류와 연계하되 기록집합에 업무 맥락을 부여하고 기록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참조분류로 활용</li> </ul> |
| 기존 분류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이 BRM을 처분분류에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처분분류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추가</li> <li>별도의 처분분류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BRM과의 연계정보를 별도로 구축할 수 있음</li> </ul>            |
|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관련 법령 조항에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존가치 선별과 같은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체계가 공공기록의 보존이나 처분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적용되도록 규정함. 공공기록물법 외에 타 법에서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기록관리 분야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li> </ul> |

##### 4.3.1 핵심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 개발·관리

핵심 업무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는 해당 분야에서 직접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즉, 공공분야의 여러 부처의 경우를 보면, 통계나 검색, 데이터 통합을 위한 참고용 목적에서는 외부의 분류체계나 유관 분야의 분류항목을 준용하지만,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주도권이 없는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관의 핵심 업무를 위한 분류체계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는 핵심 업무인 기록관

리기준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에 속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기록물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관리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 항목에는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단위가 ‘처리과’와 ‘단위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보면,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준으로 BRM의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체별·업무별 분류체계 모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을 집합화하고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의 분류체계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된다.

제22조(기록물의 분류)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분류체계 유형별 모델 중에서 ‘핵심 업무를 위한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면, 처분지침에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업무분류체계’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기간 책정단위에 적용할 일명 ‘평가분류’ 또는 ‘처분분류’와 같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는 ‘세액산출’이라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품목분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관련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관세청, 2024). 한편 같은 물품이라도 특허청에서는 품목분류표가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상품분류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상표나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 출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특허청, 2024). 이와 같이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를 위한 핵심 기준이 되는 분류표는 타 부서보다도 소관 부서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분류체계의 형식은 3장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등급분류와 같이 간략한 리스트 형식이거나 시행규칙의 [별표1]과 같은 표 형식일 수 있고, 표준산업분류와 같이 분류표와 해설서, 적용사례 등이 결합한 분류 플랫폼일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이든 ‘기록의 평가 선별에 따른 보존과 처분’이라는 핵심 업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된 별도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처분을 위한 분류단위나 분류코드가 기존의 BR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BRM 자체도 잘 관리되어야 원래의 개발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기록관리 영역의 중요한 참조코드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분류는 생산된 시점에서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이용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까지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분류체계가 모든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긴 어렵다. BRM은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기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기록집합에 업무 맥락을 제공하는 참조코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분단위와 처분지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처분단위와 분류기준으로 개선한 처분지침의 재설계에 관해서는 설문원, 이승역(2020)의 연구도 참고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업무분석 자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기간 책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BRM이 보존기간 책정과 같은 핵심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통제하는 대신 기록에 업무 맥락을 제공하고, 이후 업무단위별 기록 생산 통계나 기록집합의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다.

#### 4.3.2 기존 분류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기록의 보존까지 선별과 처분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의 유형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다음으로 권장하는 방식은 기존에 기록분류의 기반이 되었던 분류체계를 적용하되 필요시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도 기관의 핵심 업무보다는 참조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외부의 분류체계를 일부 수정한 경우에는 공통이 되는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계층에서 원 분류체계와 수정된 분류체계와의 연계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공개여부와 접근 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를 보면, 기록관리기준표의 속성에 해당하는 기록관리 항목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 단위는 단위과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분류기준표의 작성 단위는 기록의 보존과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성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 업무행위의 완전한 기록화를 위해 업무분류체계를 기록분류체계로 수용했으나, 업무 분류체계만으로 기록분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이다. 보존기간 책정을 포함한 기록관리 항목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는 처분지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를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업무 이외에 기록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물의 유형이나 주제 사안 등을 처분분류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박지영 외, 2022; 설문원, 2006).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제 동향이나 신기술 출현 등을 반영해서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별도로 관리하지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핵심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품분류를 개발하여 관리하지만, 참조 업무로 볼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법에 따른 표준분류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류표와의 연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양수산부의 분류체계가 기존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완전히 다른지 일부 수정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로서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기준이 되었던 분류체계와 이를 특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한 분류체계의 연계 정보는 국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표준통계 관리가 핵심 업무인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분류체계는 각각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질병분류와 연계된다(통계청, 2024).

이 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업종연합회를 분류할 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에서도 소분류나 세분류, 세세분류를 적용하는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서도 영업 범위를 결정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지만 이 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수준의 표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법상의 분류체계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경비업 관리에 적용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기록분류에 BRM 단위과제를 적용하는 것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해도 기록의 처분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할 필요는 있다.

#### 4.3.3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관련 법령 조항에 반영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립한 기록처분 관련 기준이나 지침을 이와 관련된 다른 법령 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기록관

리 분야의 표준을 타 부처에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를 개발한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정보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분야별 핵심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각 담당기관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한 뒤에 타 기관에서도 이를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서 출원 기준 정립과 심사를 담당하지만,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선별과 평가는 특허청이 아니라 기록관리 분야의 표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핵심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분야도 아니라면 기관의 규모가 크다고 해도 굳이 자체적으로 분류 지침이나 표준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타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참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해당 분류체계의 인지도나 중요도가 높아지고, 분류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검역법 시행규칙에서는 검역을 위한 적재화물에 대한 정보에 기획재정부의 품목분류표를 적용한다. 품목분류표의 대표화물 코드를 넣는 것이다. 검역법에서는 검역기준 관리가 핵심 업무이므로 적재화물에 대한 품목분류를 별도로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경비업법 시행령을 보면 경비업의 영업 범위에도 기본적으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고 있다.

설문원(2020, 7-8)은 2019년에 발의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여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정보자원’이나 ‘디지털 정보’가 공공기록물의 범위와 겹치며, ‘생산과 폐기’나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선별과 보존은 공공기록정책 범주와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정보의 가치 평가나 보존기간 설정, 폐기, 장기보존 등의 업무는 공공기록물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항을 공공기록물법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2022년에 일부개정되어 2023년 5월 시행예정인데, 설문원(2020)이 제기했던 전부개정안의 조항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 타 법령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기록물 평가나 처분에 관한 지침을 타 법령이 참조용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다. 기록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존이나 처분에 대한 지침과 도구는 공공영역의 정보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록관리 분야가 담당하는 핵심 역할에 해당될 것이다. 국가 통계를 담당하고, 세율을 결정하고, 직제를 구분하는 분야에서도 기록은 생산될 것이며, 이때 생산된 기록을 등록하고, 활용하고, 선별하여 보존하고 처분하기 위한 지침과 표준은 공공기록관리 분야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 선별 평가기준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당 기준이 기록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에 적용되는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분류체계가 공공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고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는 ‘세율 및 품목분류’를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분류체계는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품목 정보를 연계하며 세율 지정을 지원한다. 이는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기록물에 업무분류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존기간과 같은 기록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기록물 분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조문제목에 ‘분류’가 들어가는 375건의 검색결과를 분석하여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우선 규모와 형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3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로 공공영역의 분류체계는 법령 본문 내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등급이나 기준을 제공하는 유형이 있고, 둘째로는 시행규칙

별표와 같은 별도 서식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표 양식의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서는 별도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분류체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이나 적용사례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잡한 분류표 유형이 있었다.

또한 분류체계의 관리주체에 따른 3가지 유형과 업무 활용의 관점에 따른 2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분류체계의 적용방식을 6가지 유형에 따른 모델로 구분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개발 및 관리주체와 활용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 부서의 기존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구분했다. 다음으로는 분류체계의 기능을 의사결정이나 핵심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이 외에 참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와 같은 구분 과정에서 유형 간 의존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분류체계가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분류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당 기관이 아닌 타 부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법령에 규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통계작성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분류는 보존기간 책정을 비롯한 중요 기록관리 항목의 기준이 되는 핵심 업무와 연결되면서도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모델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록분류는 기록의 평가와 처분, 접근과 검색과 같은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맞물려 있는 핵심 업무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의 개발과 관리, 관련 업무 유형을 고려한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2호.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2호.  
경비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4호.  
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제34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4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07호.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9574호.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관세법. 법률 제19924호.  
관세청 (2024).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국가기록원 ([2022]). 기록관리기준표. 국가기록포털. 출처: [www.archives.go.kr/next/manager/archiveStandard.do](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archiveStandard.do)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NAK 4:2021(v2.2).
- 김화경, 김은주 (2014). BRM 운영을 위한 단위과제 정비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99-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199>
- 남서진, 임진희 (2017).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29-163.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29>
-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개념과 원칙. KS X ISO 15489-1:2016. (2021 개정).
- 문헌정보 - 기록의 관리를 위한 평가. KS X ISO TR 21946:2018. (2022 제정).
- 박유진 (200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과 과제. 기록학연구, 8, 57-95.
- 박지영, 이해원, 박희진, 윤소영, 강혜연, 이선민, 이주진 (2022). 전자기록 생산·활용 환경을 고려한 국가기록분류체계 모델 개발 연구. 국가기록원.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9호.
- 법제처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https://www.law.go.kr/>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0호.
- 상표법. 법률 제19809호.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 설문원 (2006).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99-219. <https://doi.org/10.4275/KSLIS.2006.40.4.199>
- 설문원 (2013a).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023>
- 설문원 (2013b).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231>
- 설문원 (2020).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기록학연구, 63, 5-36. <https://doi.org/10.20923/kjas.2020.63.005>
- 설문원, 이승익 (2020).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47-6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47>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제19694호.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8호.
- 이승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체제 전망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1호.
- 조세심판원 (2023). 판례정보,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 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출처: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503&bbsNo=29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95호.
- 차세영, 윤광석 (2023). 정부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분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통계법. 법률 제20408호.
- 통계청 (2024). 통계분류포털. 출처: [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http://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특허법. 법률 제19714호.

특허청 (2024). 지식재산제도-상표/디자인. 특허청. 출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9726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Presidential Decree No. 34111.

Act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 Act No. 19694.

Act on the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ct No. 20200.

Cha, Seyeong & Yoon, Kwangseok (2023).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BRM) for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of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NAK 4:2021(v2.2).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Act No. 19718.

Customs Act. Act No. 19924.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Firefighting Equipment. Presidential Decree No. 33913.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sidential Decree No. 34494.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459.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048.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487.

Enforcement Decree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3464.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295.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ct No. 19574.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ct No. 1924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KS X ISO TR 21946: 201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 KS X ISO 15489-1:2016.

Kim, Hwa-Kyoung & Kim, Eun-Ju (2014). Business Transaction Preparation Plan for Business Reference Model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199-2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199>

Korea Customs Service (2024).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Available: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4). Korean IP System – Trademarks/Desig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vailable: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Lee, Seungeok (2001).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Regime'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 by PRA Ac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 31-62.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Act No. 1972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https://www.law.go.kr/>

- Nam, Seo-jin & Yim, Jin-hee (2017). A Case Stud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BRM):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2), 129–163.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29>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2]).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National Archives Portal. Available: [www.archives.go.kr/next/manager/archiveStandard.do](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archiveStandard.do)
-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ct No. 19408,
- Park, Yoo Jin (2003). A study on improving operation of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8, 57–95.
- Park, Ziyong, Lee, Hyewon, Park, Heejin, Yoon, SoYoung, Kang, Hyeyeon, Lee Sunmin, & Lee, Joojin (2022). A Study on Design of National Record Classification Framework Focusing on the Digital Environ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 Patent Act. Act No. 19714.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20309.
- Regulations on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gulation No. 385.
-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Regulation No. 1032.
- Regulations on Customs Act. Regulation No. 1057.
- Regulations on Employment Insurance Act. Regulation No. 406.
-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Regulation No. 407.
- Regulations o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ct. Regulation No. 486.
- Regulations on Pollution Prevention from Ships. Regulation No. 652.
- Regulations on Quarantine Act. Regulation No. 917.
- Regulations on 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Supporting Food and Drug Safety and Commercialization. Regulation No. 1938.
- Rules on Certification of Calculation. Rule No. 340.
- Seol, Moon-won & Lee, Seungeok (2020). Major Issues and Tasks of Restructuring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 47–6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47>
- Seol, Moon-won (2006). Redesigning Retention Schedules for Accurate Document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199–219. <https://doi.org/10.4275/KSLIS.2006.40.4.199>
- Seol, Moon-won (2013a).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o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5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023>
- Seol, Moon-won (2013b). A study on problems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application of a multi-appraisal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231–254. <https://dx.doi.org/10.14404/JKSARM.2013.13.3.231>
- Seol, Moon-won (2020). Managing Information as Records Asset: Public Records Polici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3, 5–36. <https://doi.org/10.20923/kjas.2020.63.005>
- Statistics Act. Act No. 20408.

Statistics Korea (2024). Korean Statistical Classification. Available: [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Tax Tribunal (2023). Case Information: Whether the item in question (Cover Glass) should be classified under HSK 8529.90-2000 as a part of flat panel display modules, or classified under HSK 7007.19-1000 as other safety reinforced glass.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Available: <https://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503&bbsNo=294>

Trademark Act. Act No. 19809.

[부록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분류체계 관련 법령명, 조문명, 소관부처 목록

| 분류체계               | 법령명                               | 소관부처               |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환경부                |
| (게임물의)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 사건기록의 분            |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헌법재판소              |
|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의 분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 물품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 행정안전부              |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세울 및 품목 분류         | 관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 수형자 분류처우           | 교도관직무규칙                           | 법무부                |
| 회계기준(자산 분류 등)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교육부                |
| 직위분류제              | 국가공무원법                            | 인사혁신처              |
| 행정문서의 분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                |
| 보안과제의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고금 분류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
| 국유재산의 분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 기록물 분류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도서관<br>(국회기록보존소) |
| 군무원의 계급 등          | 군무원인사법                            | 국방부                |
| 군수품의 분류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방부                |
| 사상자의 분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소방청                |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장의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 환경부                |
| 도시농업 유형분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 의료제품의 분류           | 디지털의료제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물품분류               |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원가 비목 분류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국방부, 방위사업청         |
|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 무기체계의 분류           | 방위사업법 시행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법무부         |
| 기록물의 분류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국방부, 병무청           |
| 적성의 분류             | 병역법 및 시행령                         |                    |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비밀의 분류             | 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원              |
| 분류처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법무부                |
| 소년원의 분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
| 비밀의 분류             | 비밀보호규칙                            | 법원행정처              |
|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산업에 관한 표준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
| 상품분류                                                      | 상표법 및 시행규칙                                  | 특허청                    |
| 생명공학분류체계                                                  | 생명공학육성법 및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록물분류기준표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선거기록보존소) |
| 유해물 질분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                  |
| 소방장비의 분류                                                  | 소방장비관리법 및 시행령                               | 소방청                    |
| 동물 진료의분류체계                                                | 수의사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br>(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br>및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
| 상영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
| 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 물리적방호 대상 해물질의분류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시행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위험물의 분류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해양수산부                  |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의료기기 등급분류                                                 |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잔류성오염물질합유폐기물의분류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환경부                    |
|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행정안전부                  |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 행정안전부                  |
|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 채외공관주재관 임용령                                 | 외교부                    |
| 정기통신설비 분류 외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무선국 업무분류                                                  | 전파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br>통신위원회 |
| 직위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 업종 분류<br>(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중소기업벤처부                |
|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 직위분류(직위분류제)                                               | 지방공무원법                                      | 행정안전부                  |
| 자산, 부채, 순자산의 분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
|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철도사업법 및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분류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br>처    |
|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분류(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br>등에 관한 표준분류)                     | 통계법 및 시행령                                   | 통계청, 기획재정부             |
| 비밀의 분류                                                    |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법원행정처                  |
| 고체위험물질의 분류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해양수산부                  |

|                                    |                                    |       |
|------------------------------------|------------------------------------|-------|
| 상품분류전환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청   |
|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 분류                   | 특허법 시행령                            |       |
| 폐기물의 세부분류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 학술표준분류체계                           | 학술진흥법                              | 교육부   |
| 교습과정의 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   |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br>(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 기록물의 분류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헌법재판소 |
| 비밀의 분류                             |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       |
| 수형자의 분류심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법무부   |